
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7.14 (화) 10:30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
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영웅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7월 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7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,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역전략산업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)
-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(안 제5조)
-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추가(안 제11조, 안 제12조)
-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조항 신설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사용하던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,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